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7. 9. 17.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9월 3일
충청북도교육감

나. 회 부 일 자 : 2007년 9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07. 9. 12 제263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이장길 기획관리국장)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138조의 개정으로 조례설치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

Ⅲ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이명우)

○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개정예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Ⅴ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Ⅵ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Ⅶ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Ⅸ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(조례 제188호,
1964. 5. 18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[일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]

제95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
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
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[일부개정 2007.4.5 대통령령 제19995호]

제138조 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
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
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제145조 (지방자치단체 규칙) 이 영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
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
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